#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32 발의연월일: 2020. 10. 23.

발 의 자:정희용・추경호・金炳旭

김용판 · 김영식 · 지성호

전주혜 • 태영호 • 이채익

정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공공행정 업무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감안하여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고, 부동산 취득 유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일치시켜 행정, 입법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각 3년,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통

일하여 연장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안 제57조의3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	②
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1년</u> 12월	<u>2023년</u>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	
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	
산에 대해서는 <u>2021년</u> 12월 31일	<u>2023년</u>
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	
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등에 대한 감면) ①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u>2021년</u> 12월 31일까	<u>2023년</u>
지 면제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7 면)

-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 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면)
①
,
1
<u> 2023년</u>
<b>.</b>
2
<u>2023년</u>

까지 면제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 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 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2023년-----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 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 -----2023년---

3. (현행과 같음)

일까지 면제한다.

3. (생략)